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11. 과세표준과 세액

[1] 과세표준

- 과세표준이란,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
- [전단계세액공제법]에 의하여,
- $\text{과세표준} = \text{매출세액} - \text{매입세액}$

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

-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
- ②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
- ③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시가
- ④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
- ⑤ 할부이자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11. 과세표준과 세액
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

- ① 에누리액
- ② 환입된 재화의 가액
-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, 훼손, 멸손된 재화의 가액
- ④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
- ⑤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
- 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해 할인액
- ⑦ 연체이자, 봉사료 등

-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

- ① 하자보증금
- ② 판매장려금
- ③ 대손금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11. 과세표준과 세액

-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

-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경우 : 달러(\$) : 기준환율, 엔화, 유로 : 재정환율
-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받은 경우, 그 대가를 실제로 환가한 금액

- 과세표준계산 특례

- ① 과세와 면세 공통사용 재화 일괄공급

[원칙] : 실지거래가액으로 안분

단, 실지거래가액 모르면,, 감정가액 → 기준시가 → 장부가액 →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.

- ② 토지공급 → 면세. 단, 토지임대 : 임대소득으로 “과세”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11. 과세표준과 세액

-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

-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, 임대료 외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, 이를 간주임대료라 함.
- 과세표준 =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정기에금이자율 X (당해 과세기간 중 임대일 수 / 365일 (또는 366일))

- 세율

- 현행 우리나라 세율 : 10%의 단일세율체제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11. 세금계산서

-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고,
-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게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서

●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

① 필요적 기재사항

-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
- 공급하는 자의 상호 또는 성명
- 작성년월일
-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
-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
② 임의적 기재사항

- 공급하는 자의 주소
-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.종목
- 공급받는 자의 상호, 성명, 주소
- 공급품목
- 단가와 수량
- 공급연월일
- 거래의 종류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-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

: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(과세사업자)

-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

-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를 면제한다.

- ① 택시운송, 노점, 행상.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
- ② 소매업 또는 목욕, 이발,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
- ③ 자가공급, 개인적 공급, 사업상증여,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재화
- ④ 수출하는 재화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 중 일정한 것
- ⑤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대한 것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12. 전자세금계산서

-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-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.
- 발급방법 : 자체발급시스템 구축업자(ERP), 세금계산서 중개사업자(ASP), 국세청장이 구축한 SYSTEM .
- 발급 : 법인사업자,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
- 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함.
 - ✓2012년 7월 1일 이후 :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완료하여야 함.
- 가산세 : 지연전송, 미전송인 경우.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13. 납부세액

[1] 매출세액

- 일정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
- 매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

● 대손세액 공제

-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
- 다음의 식에 의한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일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.
- 대손세액 = 대손금액 X 10/110
- 판매대가로 받은 수표, 어음 등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(대손확정일) 대손세액 공제 가능.
- “대손신고” 는 확정신고시에만 가능.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13. 납부세액

[2] 매입세액

- 사업자가 거래단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

● 공제가능 매입세액

-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,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

●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

- 세금계산서 미수취,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
-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기재불성실
-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
-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및 임차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. 단, 1000cc 이하는 공제가능
-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
-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
- 토지관련 매입세액
-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소급 20일 전의 매입세액

CH.2 세무회계의 이해

1. 부가가치세

● 매입세액의 안분계산

-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X.
-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라 구분해야 함.
-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,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.
-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= 공통매입세액 X (당해 과세기간이 면세공급가액 /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)

● 의제매입세액공제

-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입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,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,
- 면세농산물 가액의 2/102(제조업), 6/106(법인 음식점업), 8/108(개인 음식점업), 4/104(유흥주점)를 매입세액으로 간주
-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.

●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: 일반과세자 1.3%, 간이과세자 2.6%